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 관리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정부 구성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을 명시하도록 하고, 부처 간 협업 촉진 및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하여 정부조직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보하는 공무원의 직종 간 보임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7384호, 2020. 6. 9. 공포, 2020. 12. 10. 시행)됨에 따라, 관할권의 범위가 일부지역에 미치는 행정기관도 예외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개념에 포함하고, 3급 또는 4급에 상당하는 공무원도 과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에 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본문 중 “**행정기관**을”을 “**행정기관(다른 행정기관에 소속하여 이를 지원하는 행정기관은 제외)**을”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그 관할권의 범위가 일부지역에 미치더라도 특정한 국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제4조제1항 중 “「**정부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을 “**법 제2조제2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장관이 특히 지시하는 사항**”을 “**제4조에 따른 직제에서 정하는 특정 업무**”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법 제2조제6항 후단**”을 “**법 제2조제7항 및 제9항**”으로, “**4급 공무원**”을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법 제2조제6항 후단**”을 “**법 제2조제7항 및 제9항**”으로, “**4급 공무원**”을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국가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u>행정기관을 말한다. 다만,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더라도 다른 행정기관에 부속하여 이를 지원하는 행정기관은 제외한다.</u>	1. ----- ----- ----- ----- <u>행정기관(다른 행정기관에 부속하여 이를 지원하는 행정기관은 제외)을 ---. 다만, 그 관할권의 범위가 일부 지역에 미치더라도 특정한 국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을 포함한다.</u>
2. ~ 8. (생략)	2. ~ 8. (현행과 같음)
제4조(직제 등)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 <u>정부조직법</u> 」(이하 “법”이라 한다) <u>제2조제2항</u> 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단위로 정하고, 그 명칭을 “○○직제”로 한다.	제4조(직제 등) ①----- ----- ----- <u>법 제2조제2항</u>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차관보) ①차관보는 <u>장관이 특히 지시하는 사항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정책의 입안·기획·조사·연구 등을 통하여 장관과 차관을 직접 보좌한다.</u> ② (생략) 제12조(보좌기관의 설치) ① ~ ③ (생략) ④ <u>법 제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과장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u> 제14조(보조기관의 설치) ①·② (생략) ③ <u>법 제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실장·국장 및 과장의 명칭은 본부장·단장·부장 및 팀장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법 제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과장은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u> ④·⑤ (생략)	제11조(차관보) ①----- <u>제4조에 따른 직제에서 정하는 특정 업무</u>----- ----- ----- -----.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보좌기관의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법 제2조제7항 및 제9항</u>----- ----- <u>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u>----- --. 제14조(보조기관의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u>법 제2조제7항 및 제9항</u>----- ----- <u>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u>----- --. ④·⑤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연 락 처	(044) 205 - 2316